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http://www.mke.go.kr

'10년 8월 30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농림수산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 이충원 과장 (500-2441)
지식경제부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팀 이상준 팀장(2110-5422)
국토부 녹색미래전략담당관 정경훈 과장(2110-6004)
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 김정환 팀장(3679-507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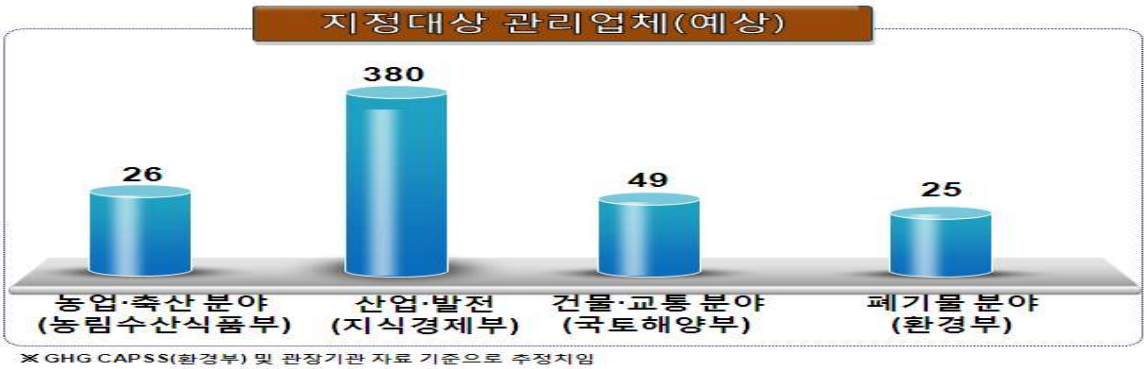
온실가스 · 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지침 고시

◇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의 **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시행 첫 단계로 「온실가스·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지침」** 고시

◇ 지정된 관리업체의 **모든 사업장과 부대건물, 물류 차량, 사무 공간 등을 포함**하여 **목표관리** 시행

□ 환경부가 관리업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**「온실가스·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지침」**을 **8월30일 고시함으로써**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의 **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본격적인 시행**에 들어갔다.

○ **올해 9월**까지 다량으로 **온실가스를 배출**하고 **에너지**를 **사용**하는 **약 480여개의 관리업체가 지정**되게 되며, 지정된 관리업체는 내년부터 **온실가스·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·이행**하게 된다.



※ GHG CAPSS(환경부) 및 관장기관 자료 기준으로 추정치임

○ 환경부를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부, 지식경제부, 국토해양부 등 **부문별 관장기관**은 **관리업체**를 **지정·고시하기 이전**에 총괄기관인 **환경부**의 **중복 또는 누락 지정 여부** 등의 **확인** 과정을 거치게 된다.



□ 환경부는 **합리적이고 선진화된 규제 마련을 위해** 미국, 호주, 일본 등 **선진사례*** **분석**과 부문별 관장기관과 함께 **12차례의 산업계 설명회와 공청회, 전문가 자문** 등을 통해 **다양한 의견을 수렴**하였다.

*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보고지침, 미국 온실가스 의무보고법령, 호주 국가온실가스·에너지보고법령, 일본 자주참가형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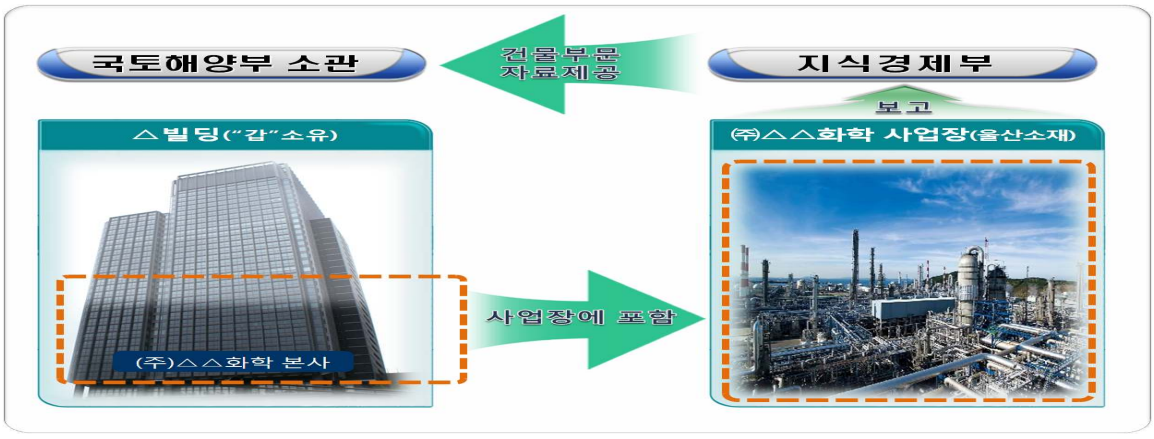
○ 특히, 농림수산식품부, 국토해양부, 지식경제부 등 **부문별 관장기관을 포함한 관계부처**와 함께 **실무기술협의회**를 **구성**하여 지침의 주요내용에 대한 **검토와 협의를 진행**하였다.

□ 이번 지침을 마련하면서 **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**에 따라 **국가 온실가스 감축기반을 마련**하는 한편 **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고려**하였다.

○ **관리업체**에는 사업장 내 생산시설, 부대건물 등의 사무·생활공간, 생산물을 운반하는 차량 등 **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부분이 관리대상에 포함**된다.



○ **관장기관이 다를 경우**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**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이중보고 등으로 인한 업계의 혼선**을 **예방**하였고,



○ **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지 않은 사업장**은 감축잠재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,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, 명세서 **보고 등의 의무를 일부 완화**함으로써 **기업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**하였다.



○ 또한, **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**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소관 관장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재심사 및 환경부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**정정제도 절차도 마련**하였다.

□ 아울러, 환경부는 이번 지침 이외에도 **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통합**하여 **금년 9월말까지 확정·고시할 예정**이라고 밝혔다.

○ 통합지침이 마련되면 기업체,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**지역별 순회설명회**와 배출량 산정 **방법 등에 대한 교육**과 **기술지원**을 추진하는 한편 **세부 업무 설명서**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.

붙임 : 지침의 주요내용

<붙임>

지침의 주요내용

◇ **관리주체**는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**통제력을 행사**할 수 있는 **法人 기준**으로 설정

◇ 법인이 **소유·운영**하는 시설 중심으로 조직경계를 설정, 단, **건물, 수송** 관련시설은 **임대·등록** 등의 경우에도 포함시키는 **특례** 규정

1 관리업체의 구분

○ 시행령은 관리업체의 **지정기준**을 업체와 사업장으로 구분

〈관리업체 지정기준〉

	2011.12.31까지		2012.1.1부터		2014.1.1부터	
	업체 기준	**사업장 기준**	**업체 기준**	**사업장 기준**	**업체 기준**	**사업장 기준**
온실가스 (CO_2 ton)	125,000	25,000	87,500	20,000	50,000	15,000
에너지소비 (terajoules)	500	100	350	90	200	80

○ 기업 감축옵션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**업체(회사) 기준** 우선 적용 후 **사업장 기준** 적용·지정

① 업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업체 내 각각의 사업장의 사업장 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관리업체로 지정·관리

② 업체 기준에는 미만이나 사업장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그 사업장을 각각의 관리업체로 관리

③ 단일 사업장으로 구성된 업체는 사업장 기준 초과시 하나의 관리업체로 관리

2 보고·관리주체의 선정

○ 온실가스 감축 등에 필요한 **실질적 통제력**을 행사할 수 있는 **법인 또는 법인 내 사업장**을 기준으로 목표관리의 주체를 선정

○ 동일 건물 내 **구분 소유자 또는 임차인**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**최대지분 보유자** 또는 **공동관리단**을 목표관리의 주체로 선정

3 조직경계의 설정방법

○ 관리업체가 **소유·운영**하고 있는 생산시설, 관리건물, 차량,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모두 포함

- 관리업체가 **임대한 건물·차량** 또는 관리업체에 **등록된 차량** 등도 관리업체의 소유로 간주하고 조직경계에 포함·관리

○ **건물 부문**은 **건축물대장과 등기부**를 기준으로 경계 판단

-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인접성, 동일법인 여부, 에너지 관리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**동일한 건물로 간주**

- 동일 건물에 구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한 건물로 취급

- 다만, **타 부문**의 관리업체에 포함되는 본사건물, 지사 등은 해당 부문 관리업체의 조직경계에 포함·관리

 * 타 부문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원(原)자료는 관장기관간 상호 공유

4 관리업체 지정대상의 선정

○ 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산정은 **명세서를 기준**으로 판단

○ 다만, 새로이 지정되는 업체의 경우에는 **기존자료*를 활용**할 수 있으며, 필요시 기초자료 요청이 가능토록 규정

* 환경부 「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시스템」
지경부 「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시스템」, 에너지사용량 신고자료
국토부 「운수행정시스템」, 「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」 등

○ **공공기관**도 관리업체 지정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**관리업체에 포함**하여 관리 (예 : 발전사, 국립대학(병원) 등)

– 단, 건물 등 기관운영과 관련된 부문의 배출량 등 통계는 공공기관 목표관리제와 공유·관리

○ **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**는 관할 환경기초시설만 기준 초과시 관리업체에 포함(건물 등 부문은 공공기관 목표관리에서 별도 관리)

5 이의신청 및 재심사

○ 관리업체 지정·고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**이의 신청** 가능

– **소명자료**는 일반현황, 사업장별 온실가스 종류·배출량 및 에너지 종류·사용량, 배출시설 현황, 산정방법 등으로 구성

○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는 재심사를 실시하고 (자문단 구성 가능)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이 확인

6 관장기관의 구분

○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관장기준* 원칙 하에 **법인의 설립목적, 주력 산업**(온실가스 배출원) 등을 기준으로 **관장기관을 세부 구분**

* 농식품부(농업·축산), 지경부(산업·발전), 환경부(폐기물), 국토부(건물·교통)

○ **세부적인 조정**은 총괄·관장기관간에 협의를 거쳐 조정 가능

7 관리업체 지정절차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5단계	6단계
관리업체 선정 및 목록 제출	중복·누락 및 적절성 확인·통보	재확인 요청 (이의 있을 경우)	재확인결과 통보	부문별 관리업체 지정·고시	관리업체 통합고시
관장→총괄 (3.31일까지)	총괄→관장 (5.15일까지)	관장→총괄 (즉시)	총괄→관장 (즉시)	관장기관 (6.30일까지)	총괄기관

7단계	8단계	9단계	10단계	11단계	12단계
지정에 대한 이의신청	이의신청 재심사	재심사결과 확인 요청	확인결과 통보	재심사결과 통보	변경 고시 (변경시)
업체→관장	관장기관	관장→총괄 (17일 이내)	총괄→관장 (7일 이내)	관장→업체	관장기관

8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경감규정

○ 업체 내 **소규모 사업장(온실가스 3천 CO_2톤 및 에너지 15TJ 미만)**에 대해서는 업체 총 배출량의 **5% 범위 내**에서 일부 **경감규정** 적용

– 사업장 단위 배출량 등은 보고하되, 검증·이행계획·실적 등의 적용 완화

* 예외적용 상한선이 사업장 지정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 규정